
2015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 차 보 고 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이 연차보고서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2015. 1. 1 ~ 2015.12.31까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재산등록 및 공개현황,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활동, 선물신고제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및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그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 1 장 공직윤리제도 운영

1. 공직윤리제도 개요

가. 공직자윤리법 도입 취지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1.12.31일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83.1.1일부터 본격 시행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여러 차례 제도의 보완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나. 그 간의 제도 운영

공직윤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1981년 공직자윤리법 제정이후 2015년 12월 31일 기준 총 46회에 걸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그 간의 공직윤리제도의 주요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변동 추이 】

1981년(제정)	1993년	1994년	2001년	2014년
3급 이상, 공직유관단체 상근 임원	4급 이상, 지방의원 공직유관단체 상근 임원 등	4급 이상, 지방의원 공직유관단체 상근임원, 세무·감사 9급 이상, 소방분야 7급 이상 등	4급 이상, 지방의원 공직유관단체 상근임원 세무·감사·소방·건축· 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 7급 이상 등	4급 이상, 지방의원 공직유관단체 상근임원 세무·감사·소방·건축· 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 및 회계관직 7급 이상 등

둘째, 1993년도부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도입으로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내역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05년 5월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공·사의간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셋째,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관 예우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1년 7월 로펌·회계법인 등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하고 업무관련성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퇴직 전 소속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 재산 공개자에 대해 퇴직 후 일정 업무에 대한 취급금지,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등이 도입되었다. 2015년 3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자의 낙하산 인사를 사전 차단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 재산등록·심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06년 12월 ‘누락사항 확인 위주’의 재산심사에서 ‘재산형성과정 확인’ 위주의 심사체계 전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고지거부제도 사전허가제’ 도입을 통하여 재산심사도 대폭 강화되었다.

다섯째, 재산등록의무자의 신고 편의 제고와 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하반기부터 안전행정부(現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 관리 프로그램인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 시스템(PRICS)』과 『공직윤리종합정보

시스템(PETI)』을 도입, 인터넷을 활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재산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08년도 하반기에 두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였다.

현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활용하여 등록의무자가 편리하게 재산신고 및 고지거부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도 체계적으로 등록의무자 관리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주요 제도 개선 내용】

- 부동산 등 주요재산의 ‘가액변동신고제’ 도입을 통한 공직자 보유재산 투명관리(‘07.06.29시행)
-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형성 과정 소명제도’ 근거 마련 및 ‘고지거부사전허가제’ 도입 등을 통한 심사강화(‘07.06.29시행)
- ‘계층적 심사제’ 도입을 통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제고(‘07.06.29시행)
 - 지자체 고위공직자 및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심사권 상향 조정
 -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원, 지자체 3급이상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 시군구의원, 4급 공직자 : 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 업무상 비밀이용, 탈세, 위장전입 등 타법령 위반 재산증식 혐의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 통보(‘07.06.29시행)
 - 국세·관세·지방세 → 국세청·관세청·지자체 / 기타 타법령 위반 → 법무부
- 등록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인이 요청하는 경우 부동산 및 금융자료를 일괄 조회하여 등록의무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금융및부동산자료사전조회 제공제도” 도입(‘07.06.29시행)
- 이해충돌 방지의무 신설, 업무관련성 적용기간 확대(3년→5년), 임의취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일정규모 이상의 범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을 취업심사 대상업체에 추가(‘11.10.30시행)
- 행위제한제도를 도입하여 본인 처리업무의 취급제한,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후 1년 동안은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과 취업업체와의 일정업무 취급제한” 도입(‘11.10.30시행)
- 취업제한 사기업체 등 규모 확대(‘14.6.25시행)
 - 영리사기업체 : 자본금 50억원→10억원, 외형거래액 150억원→100억원
 - 취업심사 제외 협회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
- 특정분야 재산등록대상이 『회계분야』로 확대, 회계관직공무원 재산등록(‘14.7.1시행)
 - 경리관, 징수관, 지출원 등 6개 관직 5~7급
- 취업제한기관 확대(‘15. 3. 31 시행)
 - 시장형 공기업 및 일부 공직유관단체 추가
 -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법인 및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추가

2. 2015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 근 거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93년부터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 구성 원칙 및 선임방법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7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나머지 4명 중 2명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으로, 2명은 시 소속 1급 이상 공무원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7명중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부위원장은 내부위원 4명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시의원은 그 임기 내, 시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급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권 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이나 법무부장관에의 조사의뢰 승인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확인 및 취업승인과 업무취급의 승인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권한으로 정한 사항 등

○ 간사 및 사무기구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 간사로는 감사위원장을 임명하였고, 재산심사·주식백지 신탁제도·취업제한제도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윤리사무팀장 및 직원 6명을 두어 윤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원활히 수행토록 하였다.

○ 회의 · 의결 등 운영방법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의결정족수)

일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요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법 제9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규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내용

2015년도는 9회 회의를 개최하여 4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회 수	일 시	안 건 내 용	비 고
제235회	2015.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재산등록 심사관련 개선(안)의 건◦공직자 이해충돌 심사 자문(안)의 건	
제236회	2015.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공직자윤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수시공개자 재산등록 심사기간 연장의 건◦2015년도 재산등록 심사대상자 선정의 건◦2015년도 정기공개자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의 건	
제237회	2015.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2014년도 3분기 수시변동자 재산등록 소명요구대상자 선정◦2014년도 4분기 및 2015년도 1분기 수시 변동자 재산등록 소명요구 대상자 선정◦2015년도 정기공개자 재산등록 소명요구 대상자 선정◦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 면제의 건◦주식백지신탁 지연제출자 처분의 건	

회 수	일 시	안 건 내 용	비 고
제238회	2015.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도 3·4분기 수시변동자 재산등록 소명사항 심사 ◦ 2014년도 4분기 및 2015년도 1분기 수시 변동자 재산등록 소명사항 심사 ◦ 2015년도 정기공개자 재산등록 소명사항 심사 ◦ 2015년도 정기 4급 및 유관단체 임원 재산등록 소명요구 대상자 선정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등 심사의 건 	
제239회	2015.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지거부 혀가 재심사의 건 ◦ 2015년도 정기 4급 및 유관단체 임원 재산등록 소명사항 심사 ◦ 2015년도 정기 특정직 및 1분기 수시 변동자 소명요구 대상자 선정 ◦ 주식백지신탁 의무위반자 검찰 통보(고발)의 건 	
제240회	2015.8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의 건 ◦ 재산등록 공개자 심사기간 연장의 건 	
제241회	2015.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지거부 혀가 재심사의 건 ◦ 2015년도 특정부서 정기변동자 재산등록 소명사항 심사 ◦ 2015년도 1분기 수시 변동자 재산등록 소명사항 심사 ◦ 2015년도 2분기 수시신고자 재산등록 소명요구 대상자 선정 ◦ 2015년도 정기 소방직 1차 재산등록 소명요구 대상자 선정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심사의 건 	
제242회	2015.10.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도 2분기 수시 변동자 재산등록 소명사항 심사 ◦ 2015년도 정기 소방직 1차 재산등록 소명사항 심사 ◦ 2015년도 3분기 재산등록 소명요구 대상자 선정 ◦ 2015년도 정기 소방직 2차 소명요구 대상자 선정 ◦ 2015년도 2분기 수시변동자 소명요구 대상자 선정 ◦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 면제의 건 	

회 수	일 시	안 건 내 용	비 고
제243회	2015.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도 3분기 수시신고자 재산등록 소명사항 심사 ◦ 2015년도 정기 소방직 2차 재산등록 소명사항 심사 ◦ 2015년도 2분기 수시신고자 재산등록 소명사항 심사 ◦ 2015년도 3분기 수시신고자 재산등록 소명사항 심사 ◦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 및 공개 면제의 건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등 심사의 건 	

나. 주요 추진실적

(1) 재산등록사항 심사

철저한 재산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등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5년도 재산심사대상자는 총 3,121명으로 심사대상자 대부분 재산을 성실히 신고하였으나, 상당한 재산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 신고자 999명(32%)에 대하여는 징계요청, 과태료부과,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의 처분을 하였다

앞으로도 재산등록심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실등록 여부’의 재산등록 사항 심사뿐만 아니라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에도 힘써 재산증식의 정당성과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재산등록사항 공개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는 공직유관단체장 12명과 구의원 418명 등 총 430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시보에 공개하였고, 그 외에 퇴직자 등 수시 변동신고자 15명의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보에 공개하였다.

(3) 고지거부 허가 심사

고지거부제도는 2006.12.28. 공직자윤리법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고지거부 사후 심사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변경되었고 허가자도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지거부제도는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중 독립생계유지 능력을 이유로 재산등록의무를 면하고자 할 때,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생활현황, 소득현황 등)를 고지거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고지거부 허가 심사기준 충족 시 허가해 주고 있다.

2015년도 고지거부허가 신청은 총 555건이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고지거부 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한 526명은 허가, 미충족한 29명은 불허로 결정하였다.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퇴직공직자의 퇴직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 취업제한 기관 등과의 유착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5년도는 9명이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서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제한기관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1명은 「취업불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는 8명은 「취업가능」으로 결정을 하였다. 아울러 2015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의 최근 3년간의 취업 현황을 일제 조사한 결과, 취업자 중 취업제한대상 업체에 임의 취업한 퇴직자는 13명으로 심사 결과, 취업업체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의결하였고 임의취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12명에게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였다.

(5)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

‘주식백지신탁제도’란 고위공직자가 특정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해당기업에 유리한 정책결정을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공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막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에 전념 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5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주식백지신탁 대상은 시장, 부시장, 1급이상 공무원, 시의원, 구의원, 공직유관단체장과 시립대 총장 등 재산공개대상자로 재산공개대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보유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없어 보유를 희망하는 경우, 안전행정부(現 인사

혁신처, 2014. 11.19 신설)내 설치되어 있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받아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되는 경우 보유가 허용된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2015년도에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청구한 공직자는 8명이었으며, 이 중 8명 모두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았다.

(6)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안정적 운영

서울시는 2007년 상반기까지 자체 개발한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을 사용하였으나,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7년 10월부터 안전행정부(現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해 재산등록 신고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매년 1~2월말까지 이루어지는 정기재산변동 신고시나 최초, 의무면제, 퇴직 등 수시로 발생되는 변동신고 시에도 등록의무자에게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매뉴얼을 송부하고 활용방법을 적극 안내하여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하여 재산신고, 고지거부 신청, 취업심사, 선물신고 등 공직윤리 업무 전반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시스템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서 현장근무자를 위해 2013.1.21.~2.6 까지 24개 소방서를 방문하여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였다.

3. 공직윤리제도의 향후 추진방향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이 증대되고 있어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공직윤리 확립이 국가경쟁력 제고 및 선진국 도약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도 개정을 거듭하여 왔다.

2014년 6월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대상 업체가 대폭 확대되었고 2015년 3월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기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공직유관단체, 학교·대학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대상에 포함되는 등 향후 보다 강화된 공직윤리제도의 운영이 예상된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높아진 시민의 요구와 행정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공직윤리제도 개선사항을 건의를 해 나가는 한편, 공직윤리제도의 엄정한 운영으로

직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제 2 장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1. 재산등록대상

가. 재산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는 4급 이상의 공무원·공직유관단체장 및 임원,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부서, 회계관직 등의 7급 이상 공무원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나. 등록대상 친족의 범위 및 고지거부 허가

재산등록대상은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으로 하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이 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에는 당해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등록대상에 포함되나 직계비속 중 혼인한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피부양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이 재산등록을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산등록 이전에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자료가 첨부된 고지거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6.12.28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2007. 7월부터 고지거부 “사후심사”를 “사전심사”로 전환하고, 고지거부 허가된 경우도 매 3년마다 심사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2015년도 고지거부허가 신청은 총 555건이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526명은 허가, 29명은 불허로 결정하였다.

다. 등록대상재산의 종류 및 가액 산정방법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준비속(고지거부자 제외)의 부동산·동산 등 전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며 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의 출연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된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등록재산의 종류 및 가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등록재산의 종류 및 가액산정 방법】

구 분	등록재산의 종류	가액 산정방법
부동산	토지의 소유권	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kreic.org/realtyprice)에서 확인 * 공유인 토지는 공유인별 지분과 가액 기재
	건물의 소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 공시가격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kreic.org/realtyprice)에서 확인 * 최근에 분양받아 기준시가가 없는 아파트는 분양가액,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가 기준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상가 가액산정방법에 의함. - 상가, 빌딩, 점포, 오피스텔 및 기준시가가 없는 기타 건물 : 개별공시지가(대지) + 지방세과세표준액(건물) * 자세한 개별공시지가 및 지방세과세표준액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 무허가 건물 : 취득가액 또는 사실상 거래가액 * 공유건물은 지분가액만 기재
	지상권, 전세권(임차권)	해당 계약금액(전세·임차보증금 등)
부동산에 관한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등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동산	소유자별 합계액 1천 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채권, 채무	해당금액 * 신탁예금은 평가액 * 적금, 보험금은 불입액(이자포함)
	소유자별 합계액 1천 만원 이상의 유가증권(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등)	액면가액 - 단, 상장(코스닥 포함)주식은 등록기준일 현재의 증권선물거래소 최종가격(증권거래소가 등록기준일 이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가격).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제품포함)	가액 기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가액 기재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취득가액, 단 골프회원권은 기준시가(국세청)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연간 소득금액
기타	합명·합자·유한회사에의 출자지분	출자금액 및 지분률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출연재산

라. 재산등록현황

2015.12.31 현재 서울시 등록의무자는 총 5,946명으로 공개대상자가 133명이고 비공개대상자는 5,813명이며, 대상자별 점유비율은 공개대상자는 전체 등록의무자의 2.2%, 비공개 대상자는 97.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5.12.31 현재 재산등록 고지거부가 허가된 등록의무자는 555명으로 전체 등록의무자의 9.3%이다.

2. 등록재산의 공개

등록의무자 중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월 이내에 관보 또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가. 재산공개대상자

법에서 정한 공개대상자의 구체적 내용과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2015.12.31현재)

공개관할	공개방법	구 분	인원	대 상 자
정 부 공직자 윤 리 위원회 (144명)	관 보	자 치 단 체 장	26	시장, 구청장
		1급 이상 공무원	12	부시장(3), 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본부장, 복지본부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안전총괄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시의회사무처장, 소방재난본부장, 국제관계대사
		시립 대 학 교	1	시립대학교 총장
		서울특별시의회	106	시의회 의원
서울시 공직자 윤 리 위원회 (430명)	시 보	유 관 단 체 장	15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SH공사 사장, 서울메트로 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울의료원 원장, 서울테크노파크 원장, 세종문화회관 사장, 복지재단 대표이사, 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자 치 구 의 회	415	구의회 의원

나. 재산공개 시기 및 방법

(1)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재산의 공개목록은 등록의무자가 작성하여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시에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등록 후 공개대상자로 신분변동(1급 이상 승진 등)이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로 된 날을 기준으로 현재의 재산을 다시 등록하고 이에 따른 재산 공개목록을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비공개대상자로 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 이후의 변동사항만을 공개토록 하여 등록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2) 재산의 공개시기 및 방법

재산공개 시기는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등록 신고 기간 만료 후 1월 이내에 관보 또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자 430명과 수시공개자 15명 등 총 10 회에 걸쳐 445명의 등록재산을 각각 서울시보에 게재하였다.

【 2015년도 재산공개 현황 】

공고번호	공개일자	공 개 자 수	비고
2015-1	2015.1.15	2 (유관단체장 1명 외1)	수시
2015-2	2015.2.26	2 (유관단체장 1명 외1)	수시
2015-3	2015.3.26	430 (구의원 418명, 유관단체장 12명)	정기
2015-4	2015.4.2	1 (구의원 1명)	수시
2015-5	2015.4.30	1 (유관단체장 1명)	수시
2015-6	2015.6.18	2 (유관단체장 2명)	수시
2015-7	2015.7.9	3 (구의원 2명, 유관단체장 1명)	수시
2015-8	2015.8.20	1 (구의원 1명)	수시
2015-9	2015.10.1	2 (유관단체장 2명)	수시
2015-10	2015.11.12	1 (구의원 1명)	수시

3.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공직자는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등록대상 재산을 모두 등록하는 최초 재산등록 외에 공직자로 재직하는 동안 정기적 또는 신분 변동 시에 신고하는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는 정기 변동신고, 신규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재산등록신고와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재등록의무자 재산변동신고 및 퇴직자 재산변동신고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기 재산변동신고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중 전년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재직중인 재산등록의무자는 모두 신고대상이 된다. 2013년도 정기변동신고 대상자(2012.12.31.기준)는 총 5,377명이었다.

나. 최초 재산등록신고

최초 재산등록신고는 신규채용·승진 등으로 최초 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와 등록의무자 중 재산등록사항 비공개 대상 직위에서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공직자가 신분변동일 현재의 재산을 신분변동일로부터 2월 이내(재산 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인해 공개자가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다. 2015년도 최초재산등록 대상자는 528명이었다.

다.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는 등록의무자가 공직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등록의무자가 아닌 직위로 신분이 변동된(전보 또는 전직) 경우에 신분변동일로부터 1월 이내에 마지막 재산등록 이후부터 신분변동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써 변동신고사항 및 신고방법 등은 정기 재산변동신고와 같다.

2015년도 의무면제자 변동신고 대상자는 218명이며, 의무면제자가 된 후 1년간 신분변동 사유 발생 월에 그전 1년간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라.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퇴직자 재산변동신고는 등록의무자로서 퇴직한 자가 퇴직일로부터 1월 이내에 퇴직 전 최근 신고(최초등록 또는 정기변동신고) 이후 퇴직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써 변동신고사항 및 신고방법 등은 정기 재산변동신고와 같다.

다만, 퇴직 후 1월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퇴직자 재산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기 재산변동신고로 갈음할 수 있고, 등록의무자가 1~2월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정기 재산변동신고사항을 퇴직자 재산변동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2015년 퇴직자는 233명으로 공개대상자는 10명, 비공개 대상자는 223명이다.

마. 재산변동신고의 유예

등록의무자가 외국파견, 휴직, 재외공관 또는 해외주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는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를 유예할 수 있으며, 2015년도에는 총 10명이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허가받았으며, 기간별로는 1년간 1명, 2년간 9명으로 나타났다.

4. 등록재산의 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며, 심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한다.

가. 심사내용·방법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의무자의 등록재산을 엄정히 심사하기 위하여 재산등록의무자가 제출한 등록서류의 기재내용, 기재방법, 증빙자료의 적합성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등록사항의 사실여부와 누락사항을 확인하는 등 성실신고 위반 여부 및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철저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비공개 대상자는 연간 심사계획에 따라 연도 내 심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등록서류의 검증은 등록기간 내 등록여부, 증빙서류 또는 소명자료 첨부 여부, 등록사항의 누락·오기여부, 재산의 종류별 표시방법 및 가액 산정 방법의 적합

및 재산 증감의 적정성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심사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2개 기관, 금융 2,799개 기관 등 총 2,801개 기관에 자료를 조회하였다.

부동산의 경우는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국세청, 서울시의 부동산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등록사항과 대조함으로써 부동산 소유현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였다.

금융재산의 경우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의무자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조회 대상자를 선별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등록사항과의 대조 심사를 통해 누락여부를 확인하였다.

<부동산 및 금융조회 기관현황>

구 분		조 회 기 관
부동산	2	국세청, 서울시 토지관리과
금 융	2,799	은행(23), 증권(49), 종합금융(4), 생명보험(24), 손해보험(15), 상호저축(94), 여신기관(28), 공제회 및 연금공단(8) 새마을금고(1,511), 협동조합(889), 투자신탁(2), 산림조합(2)

재산심사기준은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산등록사항 심사처분기준

□ 성실등록 위반 처분기준

	구 분	처 분 기 준
잘 못 신 고 한 금 액	• 2천만원 미만	실무종결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경고 및 시정조치
	• 3억원 이상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비 조 회 성 재 산	•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경고 및 시정조치
	• 1억원 이상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친 족 누 락	• 신고대상 재산이 없는 직계 존·비속을 누락	보완명령
	• 신고대상 재산이 있는 직계 존·비속을 누락 (고지거부자 제외)	잘못신고한금액 및 비조회성재산 기준에 따라 처분하되, 보완명령 이상
기 타	•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8조 제2항) • '실무종결'에 해당하더라도 정정의 실익이 있는 경우 (예: 부동산, 비조회성 재산 등)	보완명령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의 증식 ⇒ 징계(해임) 및 법무부(국방부) 조사의뢰
- 예금 항목은 순누락금액(|누락·과소신고액 - 과다신고액|) 기준 적용

□ 재산 형성과정 처분기준

	구 分	처 分 기 준
• 심사결과 사실과 다르게 잘못 신고한 재산이 있는 경우		성실등록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
•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관계기관에 타법 위반사항 통보
• 거짓소명, 거짓자료의 제출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 거부		징계의결요구, 과태료부과
• 부정한 재산의 증식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나 공직자윤리법 상 확인 및 소명이 불가한 경우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조사의뢰

□ 가중 및 감경사항

가중사항	감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경고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자료(답변) 제출이나 소명지체 등 심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계좌별, 항목별 1천만원 이상 재산을 20건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심사자로 잘못 신고한 재산이 5억원 미만이고 등록할 재산총액의 1/2 미만인 경우 <p>* 감경은 경고 이상 처분에 대해서만 적용 (보완대상은 그대로 보완명령)</p>

□ 과태료 이상(징계·해임) 처분은 아래 기준으로 상정

구 분	현 직	퇴 직	처 분 기 준
공무원	징계의결요청	과태료	※ 단, 교수·의사·계약직 등 전문직 업무 담당공무원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판단
공직유관단체	해임요구 / 과태료	과태료	
정무직·선출직	과태료	과태료	

□ 최종처분 결정 기준

- 『성실등록 위반 처분기준』과 『재산형성과정 처분기준』에 의한 가장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되, 아래 가중·감경사항을 종합하여 최종처분 결정
 - 가중 또는 감경사항이 둘 이상이어도 한단계만 적용하고, 가중사항과 경감사항이 경합될 경우 적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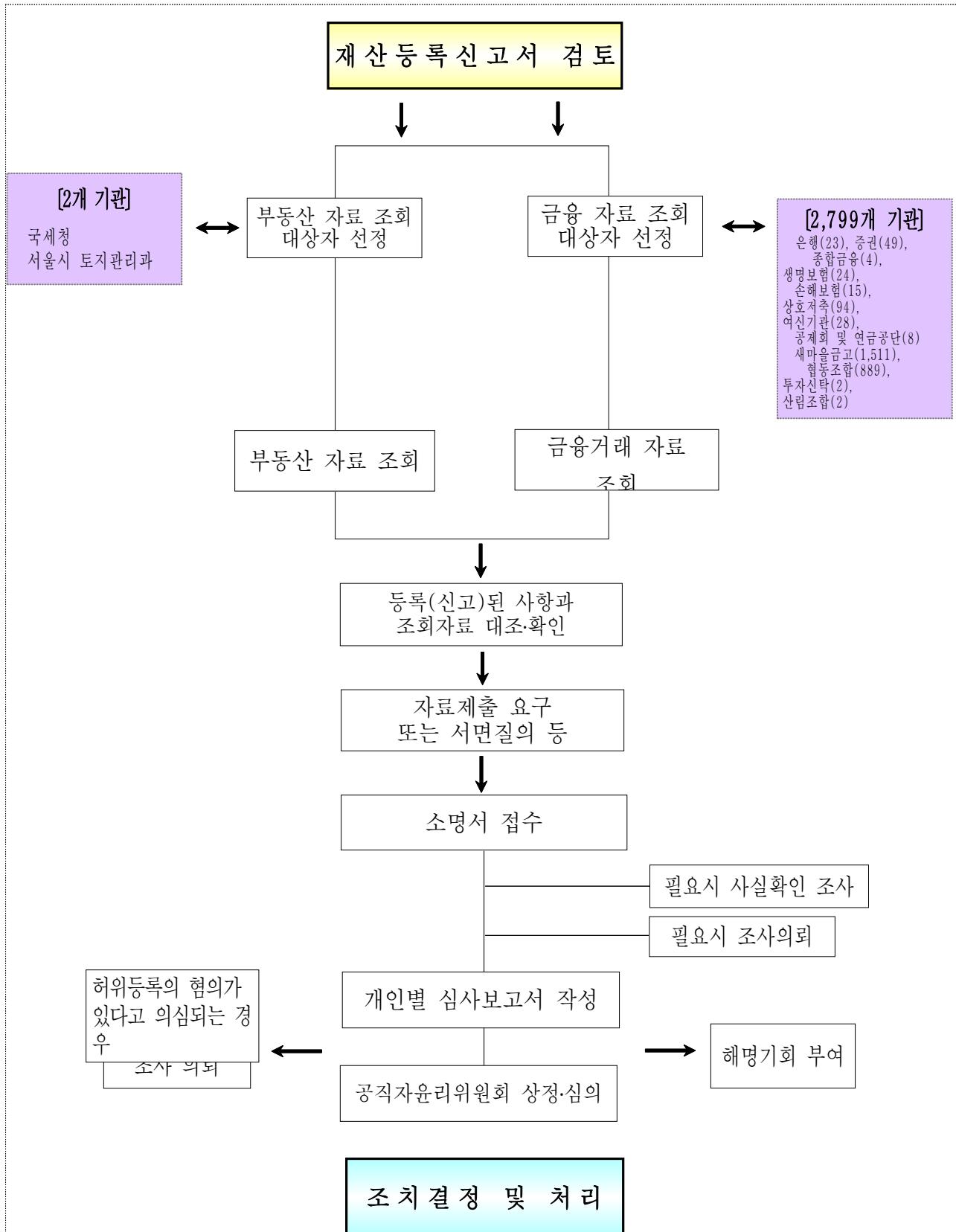
○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항목은 신고하였으나 금액 단위, 면적, 주소, 지분 등 권리명세 오기
- 정보제공요청동의를 통해 받은 제공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 신고
 - ex) 신고당시 제공받은 자료에는 없었던 계좌이나, 이후 금융기관이 위원회로 재회신하였을 때 포함되어 누락으로 인정된 경우
- 재산등록방법을 착오하여 다른 항목이나 비고 등에 신고(기재)한 경우
 - ex) 건물 소유권으로 신고하고 비고에 채무가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건물임대채무에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
- 재산등록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잘못 신고하였거나 법률상 신고대상이 아닌 재산을 잘못 신고
-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종 재산, 친목회비 등 재산의 잘못 신고
- 배우자의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잘못 신고한 경우
- 구거, 도로, 농지창고 등 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동산의 잘못 신고
- 기타 위 사항과 유사한 경우

※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잘못 신고한 처분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또한,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재산 심사절차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 등록재산 심사절차 흐름도 ▶



나. 심사결과

2015년도 심사대상인원은 2015.12.31일 현재 정기재산변동 신고자와 2015.1.1. ~ 12.31까지의 신규임용, 의무면제, 퇴직자 등을 포함하여 총 4,091명이었다. 이들의 등록재산을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심사대상자는 성실히 등록하여 2015.12월말까지 심사한 4,091명중 3,015명(74%)이 누락이나 착오 없이 등록하였고, 불성실신고자 중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이상의 제재를 받은 심사대상자는 999명(24%)이었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의무자의 등록(변동)재산 심사결과, 일부 재산을 누락하거나 착오 등록하는 등 성실등록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징계의결 요청, 과태료 부과, 경고 등의 처분이 결정된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보완을 명하는 문서와 함께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경고장」 및 「주의촉구 서한」 등을 발송함으로써 향후 재산 등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5.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

공직자윤리법 제13조에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그 밖에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등 엄격한 법적절차를 마련하여 공직자 개인의 재산등록과 관련된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열람·복사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는 아래와 같다.

- ①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사람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 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정감사 ·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으로서 특정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 세부목록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등록의무자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2015년도 등록서류의 열람·복사 신청건수는 0건이었다.

제 3 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가. 목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체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있다.

나. 업무내용

(1) 취업제한 대상자

취업제한대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이다.

(2) 취업제한기관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12월말까지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자본금 10억원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된 협회,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등·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외형 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등이다.

※ 취업제한기관 고시

2014년 12월 30일 관보에 고시한 2015년도 취업제한기관은 총 15,019개 업체로 고시된 취업제한 기관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계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	공직유관단체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의료법인 등
3,931개	13,586	157	152	656	468

(3) 취업제한여부 사전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처리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승인신청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개시 30일전까지 퇴직당시의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소속 지방자치 단체의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요청인의 퇴직 당시 소속 기관장은 요청인의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와의 업무관련성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또는 취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예정 영리사기업체와 퇴직당시 소속 기관의 의견서, 사무분장 및 담당업무, 근무현황 등을 심사하여 요청인의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여부를 심사하여 취업가능 또는 취업불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추진실적

(1)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및 취업승인 신청 심사결과

2015년도에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는 8명으로 심사결과 취업예정업체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8명 모두 취업 가능으로 결정하였으나, 취업승인 신청자 1명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2) 취업확인 일제점검결과 조치

2015년도 「취업제한대상업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 심사 없이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임의 취업한 13명을 적발하여 취업업체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13명 모두 업무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임의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12명에게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였다.

2. 주식백지신탁제도

가. 목적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회사에 백지신탁도록 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업무내용

(1)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등록의무자 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로서 시장, 부시장, 1급 이상 공무원, 시의원, 구의원, 시립대 총장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이다.

(2) 주식백지신탁 업무처리

◦ 주식매각 · 백지신탁

주식백지신탁대상자는 보유주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1월 이내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금융기관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기관은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사실을 신고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시보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주식백지신탁대상자가 보유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안전행정부, 現 인사혁신처에 설치)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필요시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등록기관은 신고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시보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 추진실적

재산공개대상자 중 2015년도에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 청구한 자는 8명이었으며, 이 중 8명 모두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았다.

3. 선물신고

가. 목적

선물신고 제도는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와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다.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의 선물은 외교관례 및 국제관계 유지를 위하여 거절하기 어려울 때가 있으므로 공직자가 받은 일정가액 이상의 선물을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나. 업무내용

(1) 선물신고 대상자

모든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대상자가 된다.

위와 같은 공직자의 가족이 외국 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2) 신고대상 선물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단체)으로부터 증정 받은 선물로서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한다.

(3) 선물의 신고절차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 등은 그 선물을 신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4) 선물의 관리 · 유지 및 처분(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선물을 이관 받은 기관의 장은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고, 기타 다른 기관에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선물은 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 추진실적

2015년도 신규로 신청된 선물 신고 사항은 없었으며, 현재 보관 중인 선물은 2013년도에 중국 대련동물원에서 선물한 옥조각품 1건으로 서울동물원에서 시민 전시용으로 활용 및 보관하고 있다.